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변경하되, 해당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의2제1항제6호 등).
-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의 범위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에서는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하여 조류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환경이나 시설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56조제5항 등).

II. 검토의견

1. 차량·장비의 안전검사 제도 개편(안 제31조의2제1항제6호 등)

개정안은 종래 공항운영자가 자체적으로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차량 및 장비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던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변경하되(안 제31조의2제1항제6호), 해당 안전검사

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1조제2항).

다만, 종래의 자체검사와 달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에 따라 검사대상, 검사항목, 검사주기 등과 같은 안전검사의무의 중요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 안전검사의 대상·항목 및 주기를 법률에 명시함(안 제31조의2제1항제6호).

또한, 해당 안전검사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그 임직원이 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검사업무 수행기관을 감독할 필요가 있고, 금품의 수수 등 부정한 행위를 할 경우 이들을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에서,¹⁾ 안전검사 위탁 기관·단체에 대한 출입·검사·보고 규정(안 제55조제1항)과 그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안 제62조의2 신설)을 둔다.

그리고, 종래 항공운영자의 자체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처벌 규정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 별도의 경과조치 두지 않으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2항·제3항2)에 따라 기존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되는 점에서, 처벌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정

1)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국회사무처, 405쪽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③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이나 법원의 과태료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변경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태료의 징수 또는 집행을 면제한다.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둔
(안 부칙 제4조 신설).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는 지상안전사고의 예방과 차량 및 장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지상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의2(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의 준수사항) ① ----- ----- ----- -----.
1. ~ 5. (생략)	1. ~ 5. (개정안과 같음)
6. 차량 및 장비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을 것	6. 국토교통부장관이 다음 각 목의 차량 및 장비의 구조 및 장치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받을 것 가. 제2호에 따라 등록된 차량.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차량은 제외한다. 나. 지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7. (생략)	7. (개정안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개정안과 같음)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등,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또는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	제55조(출입·검사 등) ① ----- ----- ----- 항공관련업무 수행단체, 항행안전시설설치자등 또는 제61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

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이나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신설>	<u>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u> ----- ----- ----- -----. ②·③ (현행과 같음) <u>제6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의 제) 제61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u> 부 칙 <u>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u>
<신설>	

2.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 제도 신설(안 제56조제5항 등)

안 제56조제5항의 경우, 종래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항공기가 이륙·착륙하는 방향의 공항 또는 비행장 주변지역 등에서 조류유인 가능성이 있는 오물처리장 등의 설치 등을 8km 이내의 범위의 지역에서 제한하던 것을,³⁾ 국제기준⁴⁾에 맞춰 공항 표점을 기준으로 반

3)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 법 제56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는 해당 호에 따른 환경이나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항 표점에서 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양돈장 및 과수원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2. 공항 표점에서 8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 조류보호구역, 사냥금지구역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이나 시설

4) 국제민간항공기구 문서 9137, 공항 서비스 지침, 3부 야생동물 위해성 관리지침, 2020 (ICAO Doc 9137, Airport Services Manual, Part 3 Wildlife Hazard Management, Fifth Edition 2020)

경 13km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하여 조류충돌 위험성을 높이는 환경이나 시설(이하 “조류유인환경”)을 조성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항 표점”은 토지이용을 제한하는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의 기준으로서 해당 지점을 범정하거나 수범자가 인식할 수 있도록 공표되어야 하는바, “공항 표점”이 공항개발 기본계획 또는 공항개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고시되는 점을 반영하여 “공항 표점”의 정의를 수정함(안 제2조제21호).⁵⁾

또한, 개정안은 “조류유인환경”을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시설로서,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 중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국제기준⁶⁾은 공항 외곽의 토

4.4.2 A 13-km circle centred on aerodrome reference point is recognised where land use should be assessed with regard to wildlife hazard management. However, the circle may be extended or reduced based on a wildlife evaluation of the aerodrome vicinity. States should consider all aviation safety concerns related to land development in the vicinity of the aerodrome to minimize the attraction of wildlife. (이하 생략)

제4.4.2조 공항 기준점(ARP)을 중심으로 반경 13km 이내 지역에서의 토지 이용은 야생동물 위해성 관리의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구역으로 인정된다. 다만, 구역은 비행장 주변의 야생동물 평가 결과에 따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각 국가는 비행장 주변 토지 개발과 관련된 모든 항공 안전상의 고려사항을 검토하여 야생동물의 유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5) 「공항시설법」

제4조(공항개발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공항 또는 비행장의 규모 및 배치

8. 그 밖에 공항 또는 비행장 개발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공항시설법 시행규칙」

제10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등) ⑤ 법 제7조제6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8. 공항 또는 비행장의 표고 및 **표점**

지이용에 대해 야생동물 위해성 관리의 관점에서(with regard to wildlife hazard management)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조류유인환경”의 정의를 명확히 함.

아울러, 개정규정에 따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이 정해질 경우 기존에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 중인 조류유인환경까지 소급하여 규제 및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용례를 두어 소급효가 제한됨을 명확하게 함(안 부칙 제2조 신설).⁷⁾

[수정의견]

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0. (생 략)	1. ~ 20. (개정안과 같음)
21. “공항 표점”이란 공항의 대표적인 지리적 위치를 나타내는 <u>지점</u> 을 말한다.	21. ----- <u>지점</u> 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제4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고시하는 지점---
22. “조류유인환경”이란 공항 주변에 조류를 유인하거나 서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이나 <u>시설로서</u> ,	22. ----- ----- <u>시설로서</u>

6) 각주 4) 참조

7) 「행정규제법」

제14조(법 적용의 기준) ① 새로운 법령등은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법령등의 효력 발생 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u>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는 것 중 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u>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조류충돌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항 표점에서 13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의 지역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하며, <u>해당 구역 내에서는 조류유인환경을 조성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⑥ ·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u>공항 표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조류충돌 위험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고려하여 -----</u> -----, 제56조(금지행위) ① ~ ④ (개정안과 같음) ⑤ ----- ----- -----, 누구든지 해당 구역에서는 <u>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여야서는 아니 된다.</u> ⑥ · ⑦ (개정안과 같음) 부 칙 제2조(<u>조류유인환경 설치 제한에 관한 적용례</u>) 제5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u>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에서 조류유인환경을 만들거나 설치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u>
--	---

그 밖에 개정안에 대한 체계·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